#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워본에서 개이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곳개 처 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워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가 동안 그 내 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맷본부가 정보곳개서 원본을 제곳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렁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90100360

] [www.iijonfood.com/ (전투 호기 조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09년08월05일] chair65@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3년12월11일]

# [육회지존]

# 정보공개서

[인터푸드플래닝]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햇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인터푸드플래닝]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 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 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 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 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 라 가맷사업을 우엿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 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 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 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 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 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67, 5층(방이동, 이름빌딩)]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538-6481]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538-6480]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회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회망자를 위한 가 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 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	랜드	주 소				
	육회지존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67, 5층(방이동, 이름빌딩			동, 이롬빌딩)	
인터푸드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플래닝	개인사업자		2015.12.01 이상걸 02-538-6481 02-5		02-538-6480		
	법인등록번호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505-34-23		34-23920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백	제고분로 467, 5층(	방이동, 이롬빌딩)		
대표자	이상걸	육회지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상걸	02-538-6481	02-538-6480		

#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육회지존]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육회지존	_
상 호	육회지존oo점	_
상표(서비스표)	20-20 - FRA \$	상표 등록번호: 4102496670000 (2013.01.18)
광 고	-	_
그 밖의 영업표지	今年회지존	-

육회지존은 홍보시 브랜드로고로 사용합니다.

###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ㆍ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이스토리콤	육회지존	2015.12.01	서울시송파구방이동 151-10	박윤영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_	-	_	97,484	_	-
2022년	_	-	_	64,462	_	-
2023년	-	ı	-	43,043	į.	1

- \* 상기 매출액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2017년도 부터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표준 상 매출액만을 기재하였습니다.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위 1)과 같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 7) A) H	ما ت	구) 기이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상걸	대표자	2015.12.01. ~ 현재	대표자	회사업무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710	상근	비상근	761(8)
2023년 12월 31일	1	_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해당없음.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여부(일자)	등록번호	등록권리자	등록만료일
전통육회 전문점 육x육 육회지존	상표권 (43류)	2013.01.18	4102496670000	박윤영	2033.01.18

상기 상표권은 등록권리자 박윤영으로부터 등록만료일까지 당사 사용을 허락받았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및 기타 점포설비등에 부착된 당사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영 업표지를 훼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고 이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자체 법인 명의등 법적인 명칭과 기타 통용 되는 명칭에 당사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신청중인 명칭 또는 변경된 명칭등을 사용 하지 못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田. 가맹본부의 [육회지존]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5년12월01일

### 2. 육회지존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리어sp	육회지존	황호성	2009.06.16.~2011.02.22	서울시서대문구창천동5-23
이스토리콤	육회지존	박윤영	2011.02.22.~2015.11.30.	서울시송파구방이동151-10
인터푸드 플래닝	육회지존	이상걸	2015.12.01. ~ 현재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67, 5층(방이동, 이롬빌딩)

### 3. 육회지존 업종

영업표지	업종				
○ 체 기 조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육회지존	기타외식	육회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육회지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1 od	2	2021.12.31		2022.12.3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52	52	0	46	46	0	46	46	0
서울	12	12	-	12	12	-	12	12	-
부산	-	-	-	-	-	-	-	-	-
대구	4	4	-	4	4	-	4	4	-
인천	3	3	-	3	3	-	3	3	-
광주	-	-	-	-	-	-	-	-	-
대전	2	2	-	2	2	-	2	2	-
울산	1	1	-	1	1	-	1	1	-
세종	_	-	-	ı	-	-	-	-	-
경기	21	21	-	16	16	-	16	16	-
강원	1	1	-	ı	-	-	-	-	-
충북	1	1	-	1	1	-	1	1	-
충남	2	2	-	2	2	-	2	2	-
전북	2	2	-	2	2	-	2	2	-
전남	1	1	-	1	1	-	1	1	-
경북	1	1	-	1	1	-	1	1	-
경남	-	-	-	I	-	-	1	-	-
제주	1	1	_	1	1	_	1	1	-

# 5. 최근 3년간 [육회지존]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52	_	_	_	_	52
2022	52	-	-	6	-	46
2023	46	_	_	_	-	46

# 6. [육회지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없음.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육회지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3 . 3 . 3 . 3		3 = 3		
		2023	3년 가맹	점사업지	l의 연간	평균 미	줄액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연간	평균	상	한	하	한	비고
		매출액	3.3m²당	매출액	3.3m²당	매출액	3.3m²당	
전체	46	304,509	10,725	865,863	17,317	18,724	3,744	46곳 산정
서울	12	346,044	13,182	865,863	17,317	18,724	3,744	
부산	-							
대구	4							5곳 미만
인천	3							5곳 미만
광주	_							
대전	2							5곳 미만
울산	1							5곳 미만
세종	-							
경기	16	283,914	9,158	596,365	12,919	129,745	5,783	
강원	-							5곳 미만
충북	1							5곳 미만
충남	2							5곳 미만
전북	2							5곳 미만
전남	1							5곳 미만
경북	1							5곳 미만
경남	-							
제주	1							5곳 미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따만, POS 미사용 및 영업월수 6개월 미만점포는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위 표는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46	3,155일(8년 8월)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해당없음.

#### 10.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

당사가 [육회지존] 가맹사업을 위해 2023년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없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 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방이동	예금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1,(방이동)	02) 421-361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인터푸드플래닝을 찾아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육회지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0,450	_	_	-	_
가맹비	8,8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교육비	1,65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개점 전 교육 미 이수시 반환

2) 당사의 계약이행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반환 조건
총계	5,000			
계약이행보증금	5,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15.45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5,450
가맹비	8,800
교육비	1,650
계약이행보증금	5,000 (부가세 없음)

3)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m² 당	지급 기한	비고
총계		[ 39,600 ]	2,613		50㎡ 기준
주방기기 설비 (정착물)	(비공개)	13,200	871	설치 1일 이전	
간판	(비공개)	3,300	218	설치 1일 이전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비공개)	16,500	1,089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전	50㎡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1,000천원 추가부담
최초 공급 상품 비용	(비공개)	3,300	218	물품 공급 1일 이전	초도물품비별 도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비공개)	3,300	217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소모품비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입지를 정하고 당사와 협의후 결정한다.다만 가맹희망자가
직접정함	당사에 입지를 의뢰시 추천해 줄수 있다.

5)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6)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육회지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가맹계약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상표사용료 등)	가맹본부	1,320/년	계약시	중도 해지시 잔여기간 해당분	기간경과분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165	교육실시5일 전			교육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비공개)	1,650~3,300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비공개)	15,400~ 17,600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교체·보수비용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POS 사용료	(비공개)	월 33	매월 말일			
점포 환경 개선 비용	가맹본부	본사 부담외 금액	-	-	-	VI1.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법정최고이 율	-	-	_	가맹계약서 44조 참조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 당사는 로열티 납부 구조로 운영되어 차액가맹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 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육회지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인터푸드플래 닝]에 [5,000]천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육회지존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당사 소유의 모든 집기를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터푸드플래닝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 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나) 당사가 정한 필수 공급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2023년) 공급가격의 상· 하하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 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	고
--------------------------------	---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내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3년 기준

#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거래액의 %)	금액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3년 기준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거래액의 %)	금액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3년 기준
		계			_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한우육회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1회 위반: 구두 경고	
한우육사시미	전투에 기재된 이되다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한우육회모둠		- 1 112 12 101 1	
한우볶음외7종	없음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 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육회	15,000원(200g)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2009.6월 기준
육사시미	30,000(200g)	"	"
육회모둠	40,000(350g)	"	"
산낚지육회	30,000(1마리/200g)	u	u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 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워 어조 베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 퓨전주점 및 실내포차 업종	육회지존	_	
○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파외시는		

- □ 귀하의 영업지역에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사의 [육회지존]과 동일한 업종의 브랜드를 추가 입점하지 않습니다.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및 방법
-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지역적 특성 들을 고려하여 그 범위(점포기준 직선거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반경 500m)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별도 표시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 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	재조정 사유 발생	영업지역 변경(안)을

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 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 당사 담당팀 서면으로 통지하고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검토 → 영업지역 30일 이내에 동의 변경(안) 작성 → 여부 회신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의가 있는 경우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 서면 통지 → 15일 이내에 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재조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의사동의 → 완료(신규 점포 입점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 영업지역 변경 완료 가능).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 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 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 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 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육회지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र्ट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②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육회지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1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 1 ]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 6 ]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8조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제8조2항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8조2항
○ [육회지존]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8조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 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8조2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4]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8조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8조
○천재지변,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등으로 당사또는 가맹사업자가 더 이상 영 업을 영위할수 없게 된 경우	제38조
O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8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	뱍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제38	조	제2항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없음.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상무인이 당사가 정안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당사관리부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

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ſ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영 업을 계속할 수 있음	
	<b>G</b> ,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 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용은 쌍방 간 협의 하여 상속인이 부담함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대리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하에 대리경 영을 시킬 수 있으며,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 여야 함	교육수료
	업무위탁	불가능	-	_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당사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육회지존]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육회 등 동일상품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원칙적으로 주6일 이상, 월25일 이상 개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상 연속하여 휴업할수 없습니다.다만,당사와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은 예외로 합니다.또한,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에 7일전까 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6:00 ~ 03:00 (13시간)	일요일, 공휴일 제외 영업	문의: 관리팀 (02-538-648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9명 이사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점주의 부재시
2명 이상	직접 근무	직계가족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육회지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	----	----------	------	-------	----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자크 케팅 고크 <u>,</u> 카메져이	대중매체 광고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 ' '   저애 무나	없음		
개별 행사	행 /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파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귀하가 계약기간 또는 종료 이후 제20조(비밀유지 의무), 제21조(경업금지 의무), 제39조(계약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 업자는 당사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7 11	,11 O	사 스 크 크 크	۱ ( ۱ ا ۱ د ۱ د ۱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0일 내외	10p~11p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3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가맹점 10곳 현황 문서 제공	D-2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13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13	
가맹금 예치	-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D-13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13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12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12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1~2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1)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2)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을 신청하거나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주소지 및 점포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등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비고
'BI-현'8/매한 스테	비용항목	비용비율	시타면서	제외사유	1175
O점포의 시설, 장비,	ㅇ간판교체 비용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가맹점사업자의	ㅇ점포환경개선일로	
인테리어 등의	O인테라어 공사비용	이전을 수반하지	비용 청구(공사	부터 3년 이내에 가	
노후화가 객관적으	(장비·집기의 교체비	않는 점포환경개선 :	계약서 등 공사	맹본부의 책임없	
로 인정되는 경우	용을 제외한 실	20%	비용을 증빙할	는시유로 계약이 종	
0위생이나 안전의	내건축공사에 소	O점포의 확장 또는	수 있는 서류 참부)	료(계약의 해지·영	
결함으로 인하여	요되는 일체의 비용	이전을 수반하는	→ 90일 이내에	않도 포함되는 경	
기맹시업의 통일성을	단, 가맹사업의	점포환경개선 :	가맹본부 부담액을	우 가맹본부 부	
유지하기 어렵거나	통일성과 무관하게	40%	가맹점사업자에게	담액 중 잔여기	
정상적인 영업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	간에 비례하는 부	
현저한 지장을	추가 공사를 실시		(단, 가맹본부와	담액은 지급하지 아	
주는 경우	함에 따라 소요되는		가맹점사업자간	니하거나 이미 지	
	비용은 제외)		별도의 합의가 있는	급한 경우에는 환	
			경우 1년의 범위내	수 가능	
			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자를 통하		
			여 점포환경개		
			선을 한 경우에		
			는 점포환경개		
			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		
			맹본부 부담액		
			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_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챔!)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 ]일 이내에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당사문의 02-538-6481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 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 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당사문 02-538-6481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육회지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육회지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육회지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3일	1,65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무료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9조에 따라 1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9조에 따라 1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	l 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申立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2-538-6481 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희망자)

본인은 『육회지존』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1.	정보공개서의	수령일	:	Ę	크 월	월 열	실

- 2.정보공개서를 마지막으로 등록한 날 : 년 월 일
-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④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⑦교육훈련프로그램
- 4.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 5.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	(인)	수령자 :	(인)
		-(절취선)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본사보관용)

본인은 『육회지존』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1. 정보공개서의 수령일 : 년 월 일
-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④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①교육·훈련프로그램
- 4.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 5.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